

# 대전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21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7. 8. 24 .  
제 출 자 : 대전광역시교육감

## I. 제안이유

- 상위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, 이 조례 제정 근거규정 및 해당 조문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과 중요한 교육정책 의사결정에 대한 외부전문가 및 주민 참여 확대 등 교육행정 환경이 변화하여 개정이 불가피함.

### ◆ 상위 관련법령 개정

- 『지방재정법상』의 이 조례 제정 근거 조항 : 2005. 8. 6. 개정

### ◆ 교육행정에 관한 환경의 변화

- 과거 : 내부 행정편의 중심의 행정
- 현재 : 주민 및 외부전문가 참여를 중시하는 전문성 확보와 투명·신뢰성 증진

## II. 주요내용

- 가. 상위 관련법령(지방재정법) 개정에 따라 수정이 필요한 조항을 개정함  
(안 제1조)

### ◆ 제1조(목적)의 이 조례 제정 근거 규정 수정

- 과거 :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(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)
- 현재 : 같은법 제33조(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) 제6항

- 나. 외부전문가 및 주민 참여를 확대하여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자, 외부 위원의 구성비를 높임(안 제2조)

### ◆ 제2조(구성)의 위원수 확대

- (제1항) 위원장 포함 11인 ⇒(같은 항) 위원장 포함 15인
- (제2항) 내부위원 7인, 외부위원 4인 ⇒(같은 항) 내부위원 5인, 외부위원 10인
- (제3항) 당연직 위원중 "행정지원과장 · 재정지원과장"은 삭제

다. 계획수립안에 대한 내부 타당성 검토 및 관련부서간 사전 의견조정 강화를 위해 실무대책반 설치근거 마련(안 제5조의1)

- ◆ 제5조의1(실무대책반) 조문 신설
  - 실무대책반 설치 근거 규정 명문화

3. 일부개정 조례안 : 붙임 참조

4. 참고사항

- 가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- 나. 관련법령 : 붙임 참조(지방재정법 등)
- 다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라. 합의여부 : 해당없음
- 마. 입법예고 :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/ 2007. 7. 11.~8. 5.

##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

### 대전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「대전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제16조의2" 를 "제33조제6항"으로 한다.

제2조 제1항 중 "11인"을 "15인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11인"을 "15인"으로, "7인"을 "5인"으로 "4인"을 "10인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교육정책담당관·행정지원과장·재정지원과장 및 시설과장"을 "교육정책담당관 및 시설과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"임기는 2년으로 하고"를 "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"로 한다.

제5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1(실무대책반)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부서간의 의견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.  
② 실무대책반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----- 제33조 제6항----- -----. -----.
제2조(구성) ① 대전광역시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 11인의 위원중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4인의 위원은 위촉위원으로 한다. ③당연직 위원은 대전광역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소속 부교육감·각 국장·교육정책담당관·행정지원과장·재정지원과장 및 시설과장으로 한다. ④ ~ ⑤ (생략)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기간으로 한다.	제2조(구성) ①----- ----- ----- 15인----- ---. ② 15인----- 5인----- -----, 10인----- -----. ③----- ----- <u>교육정책담당관 및 시설과장-----.</u>  ④~ ⑤ (현행과 같음) ⑥----- <u>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</u> ----- -----.
<u>&lt;신 설&gt;</u>	제5조의1(실무대책반) ①위원회에 상정 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부서간의 의견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. ②실무대책반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## [붙임]

### ■ 관계법령

#### ■ 지방재정법

**제33조(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)**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,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절차 등에 의하여 당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,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.

⑤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.

⑥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.

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**제39조(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)**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# **대전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**

## **심사 보고서**

2007. 9. 10

교육사회위원회

### **I. 심사 경과**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. 8. 24 대전광역시교육감
- 나. 회부일자 : 2007. 8. 24
- 다. 상정일자 : 제16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 
제3차 교육사회위원회(2007. 9. 10)  
상정, 질의, 심사, 수정가결

### **II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기획관리국장 이치범)**

#### **1. 제안이유**

「지방재정법」의 개정에 따른 인용법명 규정과 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외부전문가 및 주민의 참여를 확대시켜 전문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재정의 투명·신뢰성을 증진코자 함.

#### **2. 주요내용**

- 가. 인용법명을 규정함(안 제1조).
- 나.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비를 외부전문가 및 주민의 참여를 확대함(안 제2조).
- 다. 상정안의 내부타당성 검토 및 관련 부서간 사전 의견 조정 강화를 위한 실무대책반을 둠(안 제5조).

### **III. 검토의견 (전문위원 : 안문환)**

본 제정 조례안은 「지방재정법」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근거 규정인 인용법명과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외부전문가 및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코자 하는 사항으로,

#### **주요 내용은**

- 제1조는 인용법명을 규정하였으며,
- 제2조는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을 외부 전문가 및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,
- 제5조는 상정안의 내부타당성 검토 및 관련 부서 간 사전 의견 조정 강화를 위해 실무대책반을 두었음.

#### **조례안을 검토한 결과**

- 본 조례안은 교육청 내부에서 수립한 중기 지방교육재정계획 결정과정에서 내부공무원 대비 외부전문가 및 주민의 참여 비중이 낮아 실수요자 중심의 계획수립이 미흡하여 외부 전문가 및 주민의 참여 등을 확대하여 계획의 투명성제고를 통해 열린 행정 구현을 실현코자 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,
- 「지방재정법」이 2005년 8월 6일 개정되었음을 감안할 때 관계법령 연찬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아지며, 제2조 제6항의 “연임할 수”있는 규정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연임 횟수 제한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.

### **IV. 질 의 요 지 : 생략**

V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VI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대전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	211
--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07. 9. 10.

제 안 자 : 교육사회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조례 내용 중 연임에 관한 규정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“연임할 수 있으며”를 “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,”로 수정함  
(안 제2조 제6항).

##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

### 대전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대전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(구성) 제6항 중 “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”를 “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,”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2조(구성)①~⑤(생략) ⑥위촉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.</p>	<p>제2조(구성)①~⑤(원안과 같음) ⑥위촉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.</p>